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양문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5.

발 의 자 : 양문석 · 임오경 · 황명선
조계원 · 박희승 · 최혁진
허성무 · 김문수 · 박수현
서미화 · 양부남 · 진선미
전용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,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,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(종목단체)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. 또한,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,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,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등 세부적인 근거 조항이 없으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

이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, 대한장애인체육회

의 사업 범위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,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체육회 간 지원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34조제1항).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1호 중 “장애인 경기단체의”를 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인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등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장애인 은퇴선수 등 지원 사업

5. 장애인체육인의 복지 향상

5의2.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5의3. 장애인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

5의4.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

5의5.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	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</u>	1. <u>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인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등의</u> ----- -----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</u>	4. <u>장애인 은퇴선수 등 지원 사업</u>
5. <u>장애인 선수,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</u>	5. <u>장애인체육인의 복지 향상</u>
<u><신 설></u>	5의2. <u>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</u>
<u><신 설></u>	5의3. <u>장애인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</u>
<u><신 설></u>	5의4. <u>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</u>

<u><신 설></u> 6. (생 략) ② ~ ⑨ (생 략)	<u>관한 조사 및 연구</u> <u>5의5.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</u> <u>인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</u>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
---	---